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4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기능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조정 : 3,203명 → 3,206명(+3명) (안 제2조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539명 → 1,542명 (+3명)
-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(안 별표 3)
 - 일반직 3명 증원 : 4급 +1명, 5급이하 +2명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기능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주요 내용은,

안 제2조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1,539명에서 1,542명으로 3명 증원하는 등 정원의 총수를 3,203명에서 3,206명으로 3명 증원하고,

안 별표 3의 일반직 4급을 1명, 5급 이하를 2명 1년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